

2026년 제1호

미국 CBP 사전심사 동향 분석 리포트

[미국 품목분류 판정 사례]

철강제 수송용 탱크

오일 포집 기구

카라비너

CV 조인트 어셈블리 부분품

리튬이온배터리·충전기 세트

사전설치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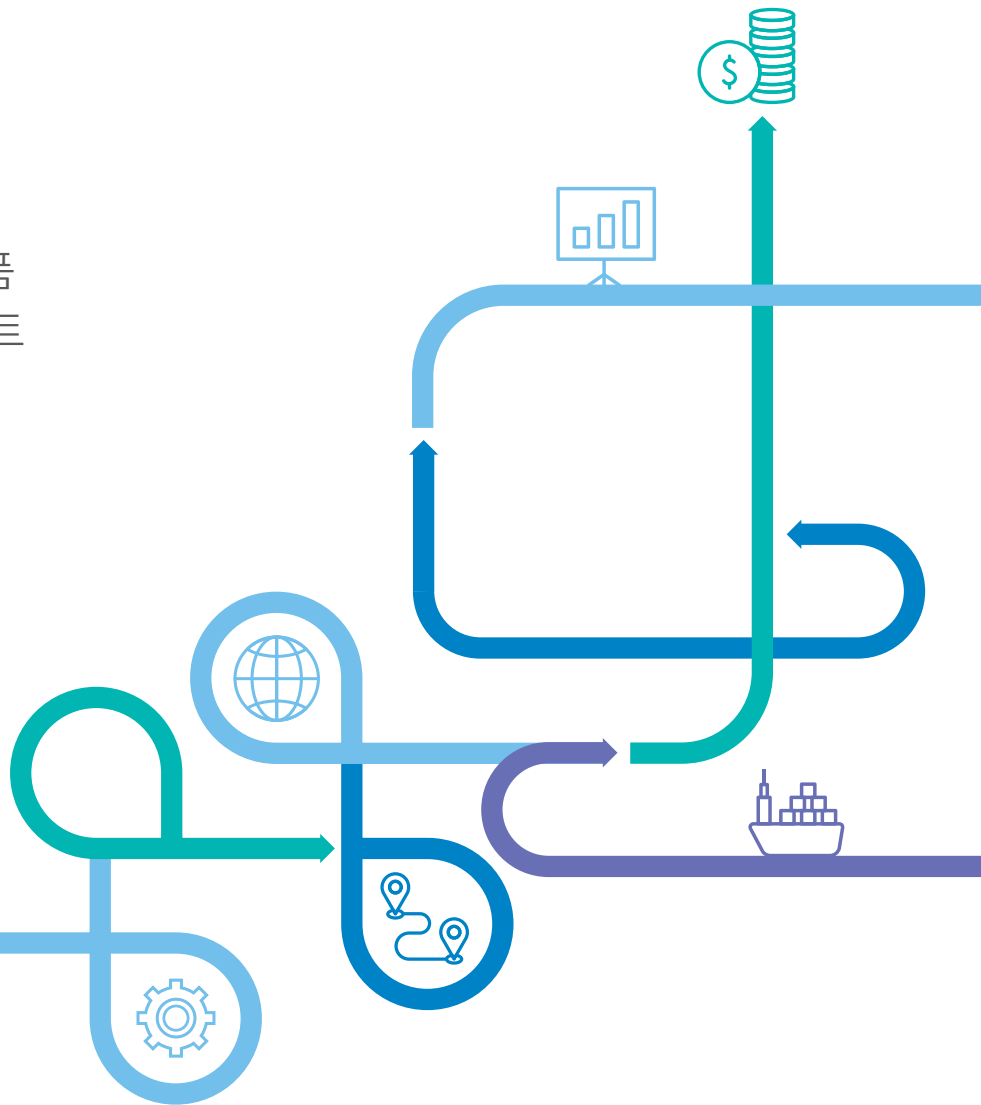
팔렛타이저

인조 나무

[미국 원산지 판정 사례]

자율조리기기

볼 밸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CONTENTS

1. 리포트 개요

2. 품목분류 판정 사례

- 2-1. 철강제 수송용 탱크
- 2-2. 오일 포집 기구
- 2-3. 카라비너
- 2-4. CV 조인트 어셈블리 부분품
- 2-5. 리튬이온배터리·충전기 세트
- 2-6. 사전설치키트
- 2-7. 팔렛타이저
- 2-8. 인조 나무

3. 원산지 판정 사례

- 3-1. 자율조리기기
- 3-2. 볼 밸브





01. 리포트 개요

(1) 분석 대상

- 2026년 1~2월 미국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사전심사 사례 중, 품목분류 및 원산지 분야 판정문 10건을 리포트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번호	분야	품명	판정번호
1	품목분류	철강제 수송용 탱크(Steel Transfer Tank)	H351314
2		오일 포집 기구(OilCatch Product)	H355020
3		카라비너(Carabiner)	N357279
4		CV 조인트 어셈블리 부분품(Parts of a CV Joint Assembly)	N357169
5		리튬이온배터리·충전기 세트(Lithium-ion battery and charger set)	H342925
6		사전설치키트(Pre-Install Kit)	N358520
7		팔렛타이저(Palletizer)	N358311
8		인조 나무(Artificial Trees)	N357865
9	원산지	자율조리기기(Autonomous Cooking Appliance)	H351954
10		볼 밸브(Ball Valve)	N358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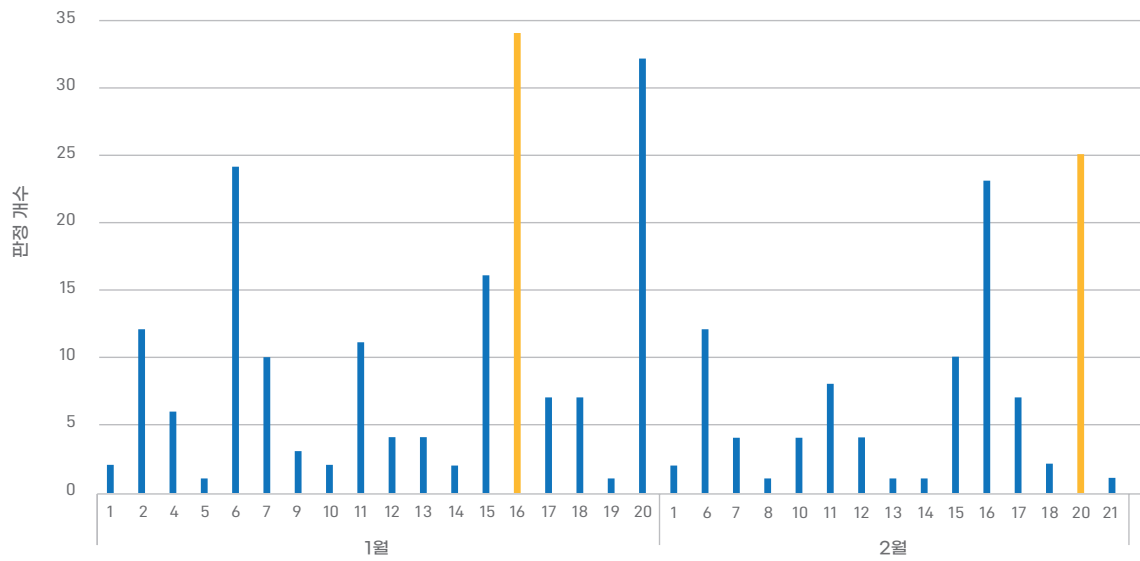
(2) 분야별 판정 현황

- CBP의 분야별 판정 건수(3월 9일 조회일 기준)는 1월 대비 2월에 품목분류와 원산지 분야 모두 감소하였으며, 전체 판정 건수는 품목분류 분야가 원산지 분야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 1월 품목분류 판정 180건 | 원산지 판정 94건
 - 2월 품목분류 판정 108건 | 원산지 판정 41건

(3) 품목별(HS 부 기준) 판정 현황

- 품목분류 분야 : 1~2월 CBP 품목분류 판정 사례 분석 결과, 기계류(제16부), 화학공업 생산품(제6부), 그리고 잡품(제20부) 등이 상위 품목군으로 확인됨.
 - 1월 제16부(기계류·전기기기), 제20부(잡품), 제6부(화학공업생산품)
 - 2월 제20부(잡품), 제16부(기계류·전기기기), 제6부(화학공업생산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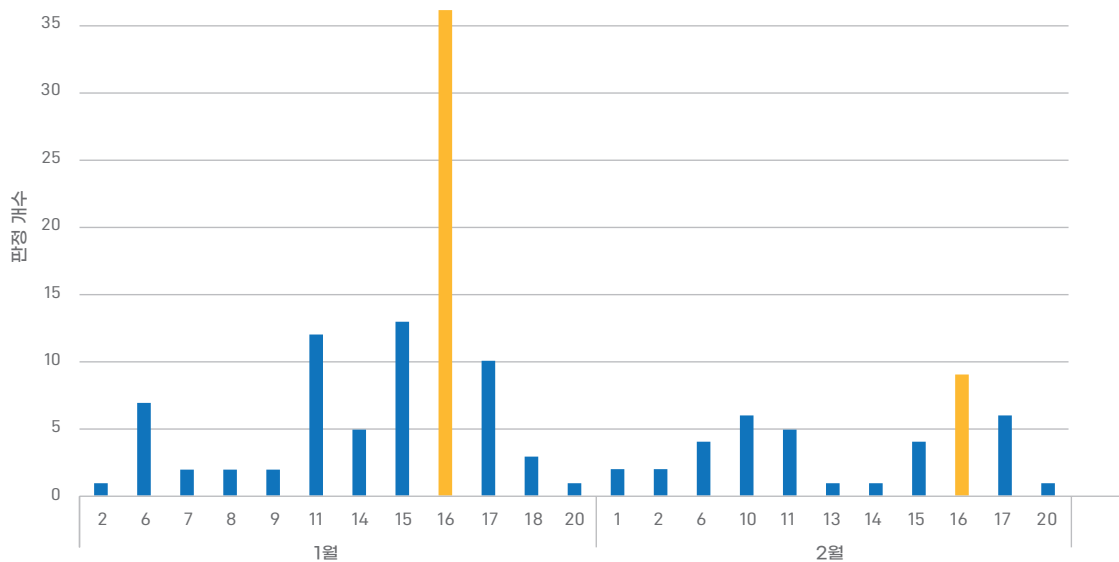
〈그림 1〉 2026년 1~2월 품목별 품목분류 판정 건수



● 원산지 분야 : 1~2월 CBP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결과, 기계류(제16부), 비금속 제품(제15부) 그리고 섬유제품(제11부) 등이 상위 품목군으로 확인됨.

- 1월 제16부(기계류·전기기기), 제15부(비금속과 그 제품), 제11부(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 2월 제16부(기계류·전기기기), 제17부(수송기기), 제10부(펄프·종이·인쇄서적)

〈그림 2〉 2026년 1~2월 품목별 원산지 판정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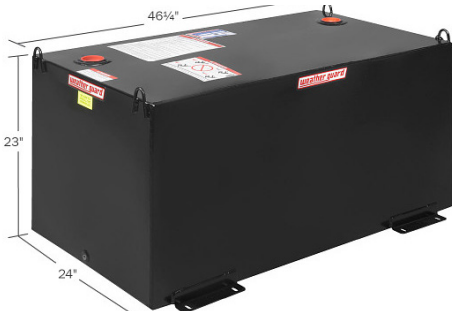


02. 품목분류 판정 사례

2-1

품목분류 CASE 1 (제73류 철강 제품)

(1) 품목정보

품 명	철강제 수송용 탱크 (Steel Transfer Tank)
판정번호	HQ H351314
판정일자	2026-01-20
신청국가	미국
HTSUS	7309.00.00
제품설명	재질: 철강(14-gauge steel) 형태: 직사각형 탱크 규격: 약 45인치(길이) x 24인치(폭) x 24인치(높이) 용량: 100갤런(약 378.5리터) 용도: 비인화성 액체 운반 구조: 탱크 상단에 2인치 개구부 2개 기계적 특성: 기계적·열적 장치는 본 물품에 미포함 수입형태: 고정용 리프팅 아이 2개와 마운팅 키트가 탱크와 함께 수입 특징: 픽업트럭 적재함에 나사로 고정하여 설치하며, 한번 트럭에 부착되면 쉽게 탈착하기 어려운 구조임
참고 사진	 *사진 출처: Werner Co. 웹사이트

(2) 쟁점사항

- 픽업트럭 적재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운송용 철강제 탱크의 품목분류
- 관련 HS 코드
 - 제7309호 : 철강으로 만든 탱크 · 용기(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
 - 제8609호 : 컨테이너(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것)
 - 제8708호 :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

(3) 관련 규정

1) 통칙 제1호

-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 해석에 관한 미국의 추가 규정(Additional U.S. Rules of Interpretation (AUSRI) 1(c))

- 어떤 물품의 부분품(parts)에 대한 규정은 해당 물품의 부분품으로서만 또는 주로 사용되는 제품을 포괄한다. 다만 “부분품(parts)” 또는 “부분품 및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에 대한 규정은, 그러한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 우선하지 않는다.

3) 제15부(비금속과 그 제품) 주 제1호

-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사. 제17부의 그 밖의 물품

4) 제17부(수송기기) 해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

-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참조).
 -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

5) 제8609호(컨테이너) 호 해설

- 이러한 컨테이너[리프트밴(lift van)을 포함한다]는 하나나 그 이상의 수송방식(예: 도로·철도·해상·항공에 의한 수송)에 의한 운반용으로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용기(packing receptacle)이다. 이러한 것은 차량·항공기·선박에 의한 수송을 할 때에 취급상의 용이와 안전을 위하여 장착구[훅(hook)·링·카스터(caster)·받침대 등]를 갖추고 있다. 이리하여 중간에서 재포장하지 않고 화물을 "문 앞에서 문 앞까지로(door-to-door)"로 운송하는데 적합하고, 또한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어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컨테이너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3) 액체나 가스 운반용 컨테이너(일반적으로 원통형이다) : 이러한 컨테이너에는 여러 가지형의 운반차량이나 선박에 장착할 수 있는 지지대가 결합된 경우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하고; 그 이외의 것은 각각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4) 분석 및 판정

1) 제8609호(컨테이너) 분류 여부 판단

- CBP는 제17부(수송기기)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15부(비금속 제품)에서 제외하도록 한 제15부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이 제17부(제8609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였다.
- 제8609호의 용어 및 해설에 따르면, 컨테이너는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필요한 구조·설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컨테이너는 훅, 링, 캐스터, 받침대 등과 같은 장착구를 갖추고, 도어-투-도어(door-to-door) 운송에 적합하며, 차량에 적재·하역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 그러나 CBP는 쟁점물품이 차량에 한번 부착된 이후에는 사실상 하역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쟁점물품과 함께 제시된 마운팅 키트는 운송용 픽업트럭의 적재함에 영구적으로 고정하기 위한 것이며 고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분리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이를 제8609호에서 규정하는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컨테이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제8708호(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 분류 여부 판단

- CBP는 미국 추가 해석규칙(AUSRI) 1(c)에 따라, “부분품 및 부속품(parts and accessories)”에 관한 호는 해당 물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호에 우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본 사례에 적용하였다.
- 이에 따라 쟁점물품을 자동차용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포괄하는 제8708호에 앞서, '철강제 탱크'로 물품을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제7309호를 우선 적용하였다.

3) 제7309호(철강으로 만든 탱크·용기) 해당 여부 판단

- 제7309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저장조·탱크 등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고 기계적 또는 열적 장치를 갖추지 않은 물품이 분류된다. 또한 이 호의 용기는 일반적으로 고정 설치되어 사용되며, CBP는 이러한 고정 설치물을 제자리에 견고하게 고정되거나 특정 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 쟁점물품은 철강으로 제작되었고, 용량이 300리터를 초과하며, 기계적·열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아 제7309호의 용어 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아울러 마운팅 키트를 통해 차량 적재함에 사실상 영구적으로 고정된 상태로 사용되므로, 차량에 고정 설치된 용기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CBP는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609호(컨테이너)나 제8708호(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가 아닌, 제7309호(철강제 탱크)로 최종 분류하였다.

(5) 결론

- 쟁점물품은 제8609호 해설상의 컨테이너 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도어-투-도어 운송을 위한 반복적인 적재·하역 없이 사실상 차량 적재함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사용된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작용하였다.
- 특히, 쟁점물품은 픽업트럭 적재함에 별도의 마운팅 키트를 나사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부착되었으나, CBP는 이를 여러 운송수단으로 수송 시 취급의 용이성과 안전을 위한 훅(hook)·링·카스터·받침대 등 장착구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 이에 따라 CBP는 쟁점물품을 컨테이너가 아닌, 차량 적재함에 사실상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사용되는 고정 부착물 성격의 철강제 탱크로 보아 제7309호로 분류하였다.
- 다만, 운송에 적합한 컨테이너 구조인지 여부는 피팅 상태, 장착 방식, 탈부착의 용이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따라서 유사 물품의 품목분류 시에는 이러한 요소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품목정보

품 명	오일 포집 기구(OilCatch Product)
판정번호	HQ H355020
판정일자	2026-01-13
신청국가	캐나다
HTSUS	3926.90.10
제품설명	용도: 오일 필터 교체 시 잔여 오일을 포집하여 누유 · 오염을 방지하는 기구 형태: 버킷 형상 규격: 4종(소/중/대/특대 사이즈) 재질/구성: 3D 프린팅 방식으로 바디(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 필라멘트)를 제작한 후, 철강 리벳으로 체결한 제품 판매 형태: 단품 또는 사이즈별 4종(각 1개) 번들 세트
참고 사진	 *사진 출처: OilCatch 웹사이트

(2) 쟁점사항

- 서로 다른 재질(플라스틱·철강)의 구성요소가 결합된 복합물품의 품목분류
- 관련 HS 코드
 - 제3926.90호: 기타 플라스틱 제품
 - 제7318.23호: 철강제 리벳(나선가공하지 않은 제품)

(3) 관련 규정

1) 통칙 제3호 (나)

-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2) 통칙 제3호 (나) 해설 (VIII)

-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4) 분석 및 판정

1) 통칙 제3호 (나) 적용 근거

- 쟁점물품은 3D 프린팅 방식으로 제작된 버킷 형태의 플라스틱 바디와 철강제 리벳이 결합된 오일 포집 기구로, 오일 필터 교체 시 발생하는 누유 및 오염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 먼저 CBP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칙 제1호만으로는 특정 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쟁점물품은 이미 완성된 제품으로서, 미완성품 또는 미조립품에 대한 통칙 제2호 (가)의 적용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쟁점 물품은 플라스틱과 철강으로 구성된 복합 물품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이루어진 물품의 분류는 통칙 제3호에 따라야 한다.
- 통칙 제3호 (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분류 가능한 호 중 가장 구체적인 호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에 대한 경합 호인 제3926호(플라스틱 제품)와 제7318호(철강제 리벳 등)는 각각 구성요소의 일부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칙 제3호 (가) 단서 조항에 따라 동일하게 구체적인 호로 간주된다.
- 따라서 통칙 제3호 (가)에 따라 품목분류를 확정할 수 없으며, 최종적으로 CBP는 통칙 제3호 (나)를 쟁점물품에 대한 분류 원칙으로 결정하였다.

2)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는 구성요소 판단

- 통칙 제3호 (나)에 따르면, 복합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되며, 이러한 본질적 특성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재료·구성요소의 성질, 용적·수량·중량·가치, 그리고 사용 시 각 구성요소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CBP는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플라스틱 바디에 의해 부여된다고 판단하였다.
 - 쟁점물품에서 플라스틱 바디는 철강 리벳에 비해 제품의 부피(bulk), 수량(quantity), 중량(weight), 가치(value) 측면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
 - 쟁점 물품의 주된 기능은 오일 필터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 오일을 포집하여 유출을 방지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핵심 기능은 버킷 형태의 플라스틱 바디에 의해 수행된다. 반면 철강 리벳은 플라스틱 바디를 연결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보조적 역할에 한정된다.
- 이에 따라 CBP는 해당 플라스틱 바디가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쟁점물품을 제3926.90.10호로 분류하였다.

(5) 결론

- 쟁점물품과 같이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될 수 있는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품은 통칙 제3호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분류의 주요 쟁점은 어느 구성요소가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다.
- CBP는 본 사례에서 통칙 제3호 (나) 해설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철강 리벳에 비해 플라스틱 바디가 기능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피, 수량, 중량 및 가치 측면에서도 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바디가 쟁점물품에 대하여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라고 판단하였다.

(1) 품목정보

품 명	카라비너(Carabiner)
판정번호	NY N357279
판정일자	2026-01-08
신청국가	영국
HTSUS	7616.99.5190
제품설명	형태: 게이트 부분에 나사식 잠금 장치(screw-gate)가 있는 금속 걸쇠 용도: 클라이밍 활동 시 사용자 또는 장비를 안전하게 연결·고정하기 위한 기계식 커넥터 작동: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게이트 잠금·해제(우발적인 잠금 개방은 방지) 기계적 특징: 게이트 및 스크루 잠금 슬리브 이외에 기계식 가동부 없음 재질: 금속과 플라스틱 복합 구성(주재질: 알루미늄) 규격: 74mm(폭) × 121mm(길이), 86g(중량), 25kN(강도)
참고 사진	 *사진 출처: DMM 웹사이트

(2) 쟁점사항

- 쟁점물품을 운동용 물품이 분류되는 제9506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HS 코드
 - 제9506호 :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
 - 제7616호 :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3) 관련 규정

1) 통칙 제3호 (나)

-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2) 통칙 제3호 (나) 해설 (VIII)

-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3) 제15부 주7

- 각 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금속을 함유한 비금속으로 만든 물품[비금속 외의 재료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이 표의 통칙에 따라 비금속으로 만든 물품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함유 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의 물품으로 본다.

(4) 분석 및 판정

1) 제9506호 분류 여부 판단

- 신청인은 쟁점물품(카라비너)이 클라이밍 등 스포츠 활동 시 사용자 또는 장비를 로프 등에 안전하게 연결·고정하기 위한 용구이므로, 운동용 물품이 분류되는 제9506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CBP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쟁점물품이 스포츠 활동 이외에도 폭넓은 작업 활동·장소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 인터넷 조사 결과에 따르면, 등산 등 스포츠용으로 설계·판매되는 카라비너가 실제로는 스포츠와 무관한 다양한 목적에도 사용되는 사례가 존재함.
 - 쟁점물품의 사용설명서에는 고층에서의 작업자에게 유용하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음.

- 이에 따라 CBP는 쟁점물품이 스포츠 전용 또는 주로 스포츠용으로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제9506호(운동용 물품) 분류를 배제하였다.

2)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는 구성요소 판단

- CBP는 쟁점물품(카라비너)이 금속 및 플라스틱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품으로서, 통칙 제1호만으로는 특정 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통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통칙 제3호 (나)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원칙으로 결정하였다.
- 통칙 제3호 (나)에 따르면, 복합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되며, 이러한 본질적 특성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재료·구성요소의 성질, 용적·수량·중량·가치, 그리고 사용 시 각 구성요소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본 사례에서 CBP는 카라비너의 용도인 연결·고정을 직접 수행하는 금속 부위를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 구성요소로 판단하였다. 또한 해당 구성요소는 합금 재질로 되어 있어, CBP는 제15부 주 제7호를 근거로 함유 중량이 가장 큰 알루미늄을 분류 기준으로 채택하였다.
- 이에 따라 CBP는 쟁점물품의 알루미늄 구성요소가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쟁점물품을 제7616.99.5190호로 분류하였다.

(5) 결론

- CBP는 쟁점물품이 스포츠 외 용도(고층 작업 등)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9506호 분류를 배제하였다.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주된 용도나 제작 의도뿐만 아니라, 제품의 객관적인 기능과 실제 시장에서의 활용 사례까지도 품목분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용도가 주요 쟁점이 되는 물품의 경우, 해당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 CBP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품목정보

품 명	CV 조인트 어셈블리 부분품(Parts of a CV Joint Assembly)
판정번호	NY N357169
판정일자	2026-01-14
신청국가	한국
HTSUS	8482.91.0010; 8482.99.3500; 8483.90.8010
제품설명	대상 물품: 등속(CV) 조인트 어셈블리에 사용되는 철강제 부품 4종 1. 볼(Balls): 어셈블리의 케이지 등 내부 구성품에 맞는 직경으로 제작된 철강 볼 2. 케이지(Cage): 볼을 고정하고, 움직일 때 방향을 잡아주는 부품 3. 아우터 레이스(Outer race): 샤프트를 갖춘 버킷 형태의 부품으로, 차량 휠 허브와 연결되어 각도가 편향된 상태에서도 토크 전달이 가능함 4. 이너 레이스(Inner race): 볼에 맞게 외경이 곡면 가공된 부품으로, 안쪽은 스플라인 가공이 되어 있어 토크를 전달하고 조향·서스펜션 변화에 따른 움직임을 지원함

(2) 쟁점사항

- 자동차 부분품(CV 조인트 어셈블리)을 구성하는 개별 부품의 품목분류
- 관련 HS 코드
 - 제8708.99호: 차량용 부분품
 - 제8482.9-호: 볼베어링·롤러베어링의 부분품
 - 제8483.90호: 전동용 엘리먼트와 부분품

(3) 관련 규정

1) Mitsubishi Electronics America v. United States 19 CIT 378, 383 n.3 (1995)

-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어떤 물품의 특정 부분에 대한 하위 부분(subpart)은, 전체에 대한 부분(part of the whole)으로 보기보다 ‘부품의 부품(part of a part)’으로 보는 것이 더 구체적이라고 명시함.

2) 제84류 주7

- 공칭 지름(Nominal Diameter)에 대한 최대오차가 100분의 1 이하이거나 0.05밀리미터 이하(둘 중 작은 기준을 적용한다)인 연마강구(Polished Steel Balls)는 특히 제8482호로 분류하며, 그 밖의 강구는 제7326호로 분류한다.

(4) 분석 및 판정

1) 제8708.99호(차량용 부분품) 분류 여부 판단

- CBP는 CV 조인트 어셈블리 전체가 제8708.99호의 차량용 부분품에 분류될 가능성은 인정하였으나, 해당 어셈블리의 하위 부분품인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 CBP는 쟁점물품을 차량용 부분품이 아닌, CV 조인트의 개별 하위 구성품(subcomponents)으로 규정하면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부품의 부품(part of a part)' 논리를 적용하였다. 즉, 쟁점물품을 본품인 차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부품(Part of the whole)이 아니라, 차량용 부품인 CV 조인트를 구성하는 '부품의 부품'으로 판단한 것이다.
- 이는 CV 조인트 자체가 제8708호에 분류 가능한 차량용 부분품의 지위를 갖더라도, 그 분류 범위를 확장하여 하위 구성품에까지 제8708호 분류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이다.
- 이에 따라 CBP는 쟁점물품의 제8708.99호 분류를 배제하였다.

2) 철강 볼의 품목분류

- 제84류 주7에 따르면, 연마된 철강 볼 중 공칭 지름의 최대·최소 편차가 1% 이하 또는 0.05mm 이하(둘 중 더 작은 기준 적용)인 경우, 이를 볼베어링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82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철강 볼은 재질에 따라 기타 철강제 물품이 분류되는 제7326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 본 사례의 쟁점물품(철강 볼)은 연마 공정을 거친 물품으로서, 제84류 주 제7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CBP는 이를 볼베어링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82.91.0010호로 분류하였다.

3) 케이지·레이스의 품목분류

- 볼베어링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82.99호 해설에 따르면 볼 베어링의 부분품에는 링(ring), 케이지(cage), 고정 슬리브(fixing sleeve)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CBP는 쟁점물품 중 케이지를 베어링의 부분품으로 판단하여 제8482.99호로 최종 분류하였다.

-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 및 그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83.90호는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식 전동 요소의 부분품을 포괄한다. CBP는 쟁점물품 중 이너 레이스 및 아우터 레이스를 이러한 전동용 장치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83.90호로 최종 분류하였다.

(5) 결론

- 자동차는 단순 부품부터 복잡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여러 구성요소의 집합체로, 각 구성요소는 다시 수많은 하위 구성품으로 세분화된다. 본 사례는 특정 부품이 최종적으로 자동차 제조 공정에 투입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물품이 반드시 자동차 부분품(제8708호 등)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 따라서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시, 해당 부품이 자동차 제조에 전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더라도, CBP는 물품 자체의 구조와 기능, 어셈블리 내에서의 역할 등에 따라서 제8708호(차량용 부분품) 이외에도 제84류(기계류)나 제73류(철강 제품) 등 다양한 품목번호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 품목정보

품 명	리튬이온배터리·충전기 세트(Lithium-ion battery and charger set)
판정번호	HQ H342925
판정일자	2026-02-03
HTSUS	8504.40.95
제품설명	대상물품: 리튬이온배터리 1개와 전용 충전기 1개가 세트로 구성된 제품 배터리 용도: 전동툴(드릴, 톱 등)의 전기 공급에 사용 충전기 용도: 배터리 충전용(전용 충전기이며, 다른 기기에는 사용할 수 없음) 정격정보: 20 Volt / 4.0Ah

(2) 쟁점사항

- 리튬이온배터리와 전용 충전기가 하나의 세트로 구성된 제품의 품목분류
- 관련 HS 코드
 - 제8504호 :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 제8507호 : 충전지

(3) 관련 규정

1) 통칙 제3호 (나)

-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2) 통칙 제3호 (나) 해설

- (Ⅷ)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 (X)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
 - 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6개의 폰듀 포크는 이 통칙에서 의미하는 세트로 간주할 수 없다.
 -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

(4) 분석 및 판정

1) 소매용 세트 해당 여부 판단

- 쟁점물품은 충전식 리튬이온배터리 1개와 전용 충전기 1개로 구성된 세트 물품으로서, CBP는 통칙 제3호 (나)에 따른 '소매용 세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 먼저 CBP는 구성품인 배터리와 충전기가 각각 제8507호와 제8504호에 해당하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두 물품이 전동 공구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특정의 목적을 위해 함께 조합된 것이며, 별도의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즉시 판매할 수 있는 형태로 포장되어 있다는 점도 인정하였다.
- 이에 따라 CBP는 쟁점물품이 소매용 세트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였다.

2)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는 구성요소 판단

- 통칙 제3호 (나)에 따르면, 복합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되며, 이러한 본질적 특성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재료·구성요소의 성질, 용적·수량·중량·가치, 그리고 사용 시 각 구성요소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신청인은 쟁점물품의 핵심 기능이 전기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세트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신청인은 소비자의 구매 동기 측면에서, 사용자가 충전기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동 공구 가동에 필수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의 기능을 보고 해당 세트를 구매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세트의 전체 가치 중에서 배터리가 63%로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 CBP는 신청인이 인용한 유사 사례들에서 배터리가 세트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로 판단된 경우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다만, 해당 사례들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다양한 전자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전원으로 기능하는 반면, 쟁점물품의 배터리는 특정한 전동 공구에 대해서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구조로, 범용 배터리를 전제로 한 사례들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CBP는 인용된 사례에서 배터리는 세트에 함께 포함된 충전기가 유일한 충전 수단이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세트에 포함된 충전기 외에도 다른 충전 수단을 통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세트 전체에서 충전기가 차지하는 가치, 역할 및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이다.
- 아울러 CBP는 구성품의 내구성과 제품 수명도 본질적 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충전식 배터리는 반복적인 충전·방전 과정에서 성능이 저하되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교체가 필요한 소모성 물품이다. 반면, 충전기는 배터리를 교체하더라도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즉, 충전식 배터리는 통상적으로 충전기보다 제품 수명이 짧기 때문에, 충전기보다 먼저 교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CBP는 시장에서 쟁점물품의 교체용 배터리가 별도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도 배터리의 기대수명이 충전기보다 상대적으로 짧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당 배터리는 반드시 전용 충전기를 통해서만 재충전이 가능하므로, 만약 전용 충전기가 없다면, 본래의 충전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1회용 배터리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CBP는 상기에 기술한 판단 내용을 근거로,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소비자가 해당 세트를 구매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단순히 배터리 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충전기를 통해 배터리를 지속적으로 충전 및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CBP는 전체 세트의 본질적 특성은 배터리가 아니라 충전기에 의해 부여된다고 판단하면서, 충전기가 분류되는 제8504.40.95호를 전체 키트에 대한 품목번호로 결정하였다.

(5) 결론

- 본 건은 배터리와 충전기로 구성된 세트 물품에서, 배터리가 아닌 충전기가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 구성요소로 판단된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 일반적으로 이러한 세트 구성에서는 전력을 저장하고 기기에 공급하는 배터리가 주된 요소로 간주되기 쉽다. 실제로 본 사례에서는 가격 측면에서도 배터리가 충전기보다 세트 전체 가격에서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럼에도 CBP는 신청인이 참고한 유사 사례들과 달리 충전기를 주요 구성요소로 판단하였다. 이때 판단의 주요 근거로는 구성품 간 기대수명의 차이, 소비자의 실질적 구매 동기, 충전 수단의 전용성 여부 등이 활용되었다.

(1) 품목정보

품 명	사전설치키트(Pre-Install Kit)
판정번호	NY N358520
판정일자	2026-02-12
신청국가	미국
HTSUS	8486.90.0000
제품설명	대상물품: EUV(극자외선) 반도체 포토리소그래피 장비의 메인 캐비닛 설치를 위한 키트 구성품: 서비스 플로어 및 서브 조립품 1. 서비스 플로어(Service Floor): 브래킷, 플레이트, 너트, 볼트, 기계식 및 전기식 커넥터, 내진 앵커, 연기 감지기, 압력 측정 어셈블리로 구성된 직사각형의 플랫폼으로, 본 장비(반도체 포토리소그래피)의 메인 캐비닛이 설치되는 지지 기반 2. 서브 조립품(Subassemblies): 철강제 밸브, 파이프, 호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비스 플로어를 통해 클린룸의 메인 캐비닛과 서브팜(sub-fab)의 장비를 연결 기능 및 역할: 본 장비 가동 중 발생하는 진동을 저감하고, 메인 캐비닛과 서브팜의 장비 간에 공기 및 수냉, 센서 데이터, 레이저 펄스 등의 전달 기능을 수행 수입형태: 사전설치키트는 미조립 상태로 수입 본 장비와의 관계: 사전설치키트에는 본 장비 자체는 포함되지 않으며, 본 장비는 반도체 제조공장 클린룸에 설치되는 메인 캐비닛과 서브팜에 설치되는 여러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대형 모듈식 어셈블리임

(2) 쟁점사항

-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설치에 사용되는 키트 제품의 품목분류
- 관련 HS 코드
 - 제8486.90호 : 반도체 제조 장비의 부분품과 부속품

(3) 관련 규정

1) 통칙 제3호 (나)

-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2) 통칙 제3호 (나) 해설

- (Ⅷ)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 (X)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
 - 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6개의 폰듀 포크는 이 통칙에서 의미하는 세트로 간주할 수 없다.
 -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

3) 제8486호 해설

- (E) 부분품과 부속품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하는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특히, 이 호의 기계와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툴홀더(tool holder)와 그 밖의 특수 부착물 등을 포함한다.

(4) 분석 및 판정

1) 소매용 세트 해당 여부 판단

-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 장비의 메인 캐비닛을 지지하는 서비스 플로어와, 호스·밸브·파이프 등으로 구성된 서브 조립품이 하나의 세트로 구성된 키트로서, CBP는 쟁점물품이 통칙 제3호 (나)에 따른 ‘소매용 세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 먼저 CBP는 본 키트의 구성품인 서비스 플로어와 서브 조립품이 각각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당 키트의 두 구성품이 반도체 제조 장비의 메인 캐비닛을 안정적으로 설치하고, 장비의 각 구성요소가 서로 연결되도록 하여, 전체 장비가 의도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조합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CBP는 이 키트가 특정한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함께 구성된 물품의 조합이라는 점도 인정하였다.
- 마지막으로, 통칙 제3호(나)에 따른 소매용 세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는 적합한 형태로 조합한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통상의 소매 판매 목적의 물품이 아니라, 반도체 제조 공정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제조 공장으로 공급되는 물품이다. 그럼에도 CBP는 통칙 상의 소매용 세트로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소매 판매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즉, 제조 공장에 장비 설치를 위해 공급되는 경우라도 별도의 재포장 없이 사용자에게 전체 세트 물품이 그대로 공급되는 경우라면, 세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판단이며, 이는 기존 판정 사례(HQ H011015)에서의 CBP 해석과도 일치한다.
- 이에 따라 CBP는 쟁점물품이 소매용 세트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최종 판단하였다.

2)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는 구성요소 판단

- 통칙 제3호 (나)에 따르면, 복합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되며, 이러한 본질적 특성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재료·구성요소의 성질, 용적·수량·중량·가치, 그리고 사용 시 각 구성요소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CBP는 소매용 세트 요건을 충족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를 서비스 플로어로 판단하였다. 이는 본 장비의 메인 캐비닛 하단 부분을 형성하고, 장비를 구조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이 본 키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 이에 따라 CBP는 서비스 플로어가 분류되는 제8486.90호(반도체 제조장비의 부분품 및 부속품)를 전체 키트에 대한 품목번호로 결정하였다.

(5) 결론

- 본 사례의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 시설 내 특정 장비의 설치를 위한 키트로서, 단순히 장비를 바닥면에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일반적인 구조물에 그치지 않고, 본 장비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전용 부분품으로 인정되었다.
- 특히 본 판정을 통해 통칙 제3호(나)에 따른 '소매용 세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소매 판매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CBP의 일관된 해석을 재확인하였다. 즉, 최종 사용자가 제조 공장인 경우에도, 별도의 재포장 없이 사용자에게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전체 구성품이 함께 조합된 키트라면, 소매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소매용 세트'의 분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1) 품목정보

품 명	팔레타이저(Palletizer)
판정번호	NY N358311
판정일자	2026-02-18
신청국가	미국
HTSUS	8428.90.0390
제품설명	대상물품: 물품이 담긴 포대 또는 상자를 빈 팔레트 위에 자동으로 적재한 후, 스트레치 래핑 기계로 팔레트에 적재된 화물을 래핑하는 자동화 팔레타이징·래핑 장비 구성요소 1. 경사 컨베이어(inclined conveyor) 2. 적재 챔버(stacking chamber) 3. 팔레트 디스펜서(pallet dispenser) 4. 랩핑 기기(stretch wrapping machine) 5. 상부 매니퓰레이터 어셈블리(overhead manipulator assembly) 작동 방식 ① 물품이 담긴 포대 또는 상자가 컨베이어 후단에 투입되어 적재 챔버 상단으로 이송 ② 매니퓰레이터가 화물을 집어 방향을 맞춘 후 빈 팔레트 위에 일정한 패턴으로 적재 ③ 팔레트에 적재된 화물이 컨베이어를 통해 스트레치 래핑 기계로 이동 ④ 적재 화물을 래핑한 후 작업 종료
참고 사진	 *사진 출처: Volm Companies 웹사이트

(2) 쟁점사항

- 화물을 팔레트 위에 일정한 패턴으로 적재하고, 래핑하는 자동화 기기의 품목분류
- 관련 HS 코드
 - 제8422호: 병·강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합용·실링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
 - 제8428호: 그 밖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

(3) 관련 규정

1) 제16부 주4

-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2) 제16부 해설 (Ⅶ) 기능단위기계 (부의 주 제4호)

- 이 주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제84류나 제85류(제85류에 더 많다)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요소로 형성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여러 가지의 구성요소가(편의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공기·압축가스·기름 등을 운송하는)·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전부로서 그 기능에 따라 적절한 호에 분류한다.
-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란 전체로서의 기능단위기계에 특유한 기능의 수행에 필수적인 기계와 기계의 조합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계나 장치는 제외한다.

(4) 분석 및 판정

1) 제16부 주4 해당 여부 판단

- 쟁점물품은 투입된 화물을 빈 팔레트 상에 적재하는 부분(팔레트 디스펜서, 적재 챔버, 매니퓰레이터 어셈블리 등)과 팔레트에 적재된 화물을 래핑하는 부분(래핑 기기)으로 구성된 시스템 장비이다.

- 해당 구성요소들은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 연결되어 화물을 이송하며,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는 화물을 하나의 팔레트 단위로 집적(Consolidate)하는 단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각 기능 단위가 연속적으로 작동한다.
- 이에 따라 쟁점물품은 제16부 주4에 명시된 ‘특정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설계된 개별 기기들의 조합’인 기능단위 기계(Functional Unit)의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CBP는 쟁점물품을 개별 기기별로 분리하지 않고, 시스템 전체가 수행하는 명확히 정의된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품목번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기능단위기기의 품목분류 결정

- 신청인은 쟁점물품을 포장기기로 보아 제8422호 분류를 주장하였으나, CBP는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일련의 공정 중 제8422호의 용어에 열거된 충전, 밀봉, 라벨 부착, 실링 등의 공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CBP는 쟁점물품의 개별 구성요소가 화물을 팔레트 단위로 집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각 기능 단위가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을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 특히,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수행되는 래핑 기능을 독립된 포장 기능이 아닌, 다른 구성요소와 마찬가지로 시스템 전체의 화물 집적 기능을 완수하기 위한 일련의 공정으로 보았다.
- 이에 따라 CBP는 제84류 내에서 쟁점물품의 단일 기능인 '화물의 집적'에 부합하는 호를 검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가 분류되는 제8428호에 분류하였다.

(5) 결론

- 본 사례에서는 쟁점물품이 여러 구성요소가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설계된 시스템 장비로 판단됨에 따라, 제16부 주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었다.
- CBP는 빈 팔레트 상에 화물을 위치시키는 기능뿐만 아니라, 최종 공정에서 수행되는 래핑 기능 역시 시스템 전체의 기능을 완성하기 위한 일련의 공정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유사한 물품을 품목분류할 때, 특정 기능이 '독립된 기능'인지, 아니면 '전체 시스템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공정인지를 판단하는데 참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 특히 제84류에 분류되는 대형 설비류의 경우, 이와 같이 개별 구성요소가 각기 다른 세부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때 각 요소의 역할이 하나의 목적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지를 관련 주 규정에 근거하여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1) 품목정보

품 명	인조 나무(Artificial Trees)
판정번호	NY N357865
판정일자	2026-02-05
신청국가	중국
HTSUS	6702.10.2000
제품설명	대상물품: 높이 약 3피트(약 91cm)의 장식용 인조 나무 색상: 검은색 또는 주황색 구성요소 1. 플라스틱 받침대 2. 금속 튜브(기둥) 3. PVC 플라스틱 가지(철사로 된 심지에 플라스틱 솔잎 조각이 부착된 형상)

(2) 쟁점사항

- 할로윈 장식용 인조 나무의 품목분류
- 관련 HS 코드
 - 제9505호: 축제용품·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
 - 제6702호: 인조 꽃·잎·과실로 만든 제품

(3) 관련 규정

1) 제9505호 해설

- (A) 축제용품은 축제나 축제 기간과 관련된 제품으로, 해당 축제나 축제 기간 외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제품이다. 그러나 특정 축제나 축제 기간이 아닌 계절과 일반적으로 연관된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축제용 물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 (1) 실내·테이블·야외 공간 등을 장식하는데 사용하는 축제 장식품(예: 화환, 랜턴 등); 특정 축제와 전통적으로 연관된 케이크 장식품(예: 동물, 깃발 등)

2) 제6702호 해설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여러 가지 부분을 결합(상호간에 결속·접착·부착·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것)하여 천연생산물과 닮은 인조의 꽃·잎·과실. 이 범주에는 조화 제조 방법에 의하여 만든 꽃·잎·과실의 모형틀도 포함한다.

3) 통칙 제3호 (나)

-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4) 분석 및 판정

1) 제9505호 분류 여부 판단

- 신청인은 쟁점물품이 할로윈 축제 장식용으로 판매되는 인조 나무라는 점을 근거로, 축제용품이 분류되는 제9505호 분류를 주장하였다.
- 그러나 CBP는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쟁점물품이 할로윈용으로 마케팅 및 판매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축제용품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나무 자체는 할로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모티프가 아니며, 통상적으로 나무 장식품이 할로윈 장식으로 인식되는 물품의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이에 따라 CBP는 쟁점물품의 제9505호(축제용품·가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 분류를 배제하였다.

2)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는 구성요소 판단

- CBP는 쟁점물품(인조 나무)이 플라스틱 받침대, 금속 기둥, 플라스틱 솔잎 장식으로 구성된 복합물품으로서, 통칙 제1호만으로는 특정 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통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통칙 제3호(나)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원칙으로 결정하였다.
- 통칙 제3호 (나)에 따르면, 복합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되며,

이러한 본질적 특성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재료·구성요소의 성질, 용적·수량·중량·가치, 그리고 사용 시 각 구성요소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쟁점물품은 실제 나무의 형상에 따라 기둥, 가지, 잎사귀 형태의 각 구성요소가 결합된 제품으로, CBP는 플라스틱 재질의 솔잎 부분이 물품의 외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관세율표(HTSUS) 제6702.10.2000호에는 철사와 같은 유연한 재료를 묶거나 접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립된 인조 잎이 특게되어 있다.
- 이에 따라 CBP는 해당 구성요소가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쟁점물품을 제6702.10.2000호로 분류하였다.

(5) 결론

- 쟁점물품이 할로윈 축제용으로 판매되는 장식용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축제의 전형적인 모티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제용품(제9505호)으로 분류가 배제된 사례이다.
- CBP는 나무는 통상적으로 할로윈 축제를 연상시키는 장식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단순히 할로윈 장식용으로 마케팅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제9505호의 축제용품 분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 따라서 이와 유사한 장식용품의 품목분류 시에는, 해당 물품이 사회 통념상 특정 축제의 전형적인 모티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03. 원산지 판정 사례

3-1 원산지 CASE 1 (제85류 전기기기)

(1) 품목정보

품 명	자율조리기기(Autonomous Cooking Appliance)	
판정번호	HQ H351954	
판정일자	2026-01-22	
신청국가	미국	
원산지 판정	• 비특혜원산지: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중국'으로 원산지 판정 • 특혜원산지(한-미 FTA): 일부 시나리오에 한하여 특혜관세 적용 인정	
제품설명	대상물품: 음식 조리 과정을 자동화하는 가정용 자율 조리기기 주요 구성요소 1. 고체 재료용 대용량 디스펜싱 시스템 2. 향신료 및 분말용 소용량 디스펜싱 시스템 3. 소프트웨어 제어형 인덕션 버너 4. 레시피 로직과 연동되는 전동 교반 장치 5. 식재료 인식 및 조리 과정 모니터링용 통합 카메라·LED 시스템 작동 방식 ① 사용자는 기기 화면 또는 연동 애플리케이션에서 원하는 레시피 선택 ② 선택된 레시피에 따라 기기에 투입하여야 할 재료의 종류와 수량 표시 ③ 사용자가 재료를 투입한 후, 조리 시작 지시 ④ 투입된 재료를 바탕으로 기기가 조리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여 요리 완성	
부분품 정보	부분품 명칭	원산지
	PCBA(인쇄회로기판)	한국 또는 중국
	Power & Heating Components(전원 및 가열 부품)	중국
	Stirrer Assembly(교반 장치)	중국
	Display & Vision System(화면 시스템)	대만
	Fluid Handling System Pumps(유체 처리 펌프)	중국
	Structural & Enclosure Components(구조 및 외장 부품)	중국
	Plastic Enclosure Parts(플라스틱 외장 부품)	중국

(2) 쟁점사항

- 1. 시나리오별 비특혜원산지 판정
- 2. 시나리오별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 가능 여부

(3) 제조 공정

- 시나리오 별 제조공정
 - 시나리오 A: PCBA 제조 공정 및 구성품 조립 공정(부품 체결, 전선 연결, 육안 검사)은 중국에서 수행되며, 최종 조립 공정 및 제품 선적은 한국에서 수행
 - 시나리오 B: PCBA 제조 공정과 최종 조립 공정 및 제품 선적은 중국에서 수행되며, 구성품 조립 공정(부품 체결, 전선 연결, 육안 검사)은 한국에서 수행
 - 시나리오 C: PCBA 제조 공정은 한국에서 수행되며, 구성품 조립 공정(부품 체결, 전선 연결, 육안 검사)과 최종 조립 공정 및 제품 선적은 중국에서 수행

〈표 1〉 시나리오별 제조공정

구 분	제조 공정	관련 국가
시나리오 A	마더보드 및 인덕션 보드 PCBA를 표면실장기술(SMT) 공정으로 제조	중국
	각 하위 조립체 조립(부품 체결, 전선 연결, 육안검사)	중국
	하위 조립체 상호 결합, 소프트웨어(인도산) 탑재, 테스트, 포장 및 선적	한국
시나리오 B	마더보드 및 인덕션 보드 PCBA를 표면실장기술(SMT) 공정으로 제조	중국
	교반 장치, 대용량 디스펜싱 시스템, 소용량 디스펜싱 시스템 조립 (부품 체결, 전선 연결, 육안검사)	한국
	하위 조립체 상호 결합, 소프트웨어(인도산) 탑재, 테스트, 포장 및 선적	중국
시나리오 C	마더보드 및 인덕션 보드 PCBA를 표면실장기술(SMT) 공정으로 제조	한국
	교반 장치, 대용량 디스펜싱 시스템, 소용량 디스펜싱 시스템 조립 (부품 체결, 전선 연결, 육안검사)	중국
	하위 조립체 상호 결합, 소프트웨어(인도산) 탑재, 테스트, 포장 및 선적	중국

(4) 분석 및 판정

1) 비특혜원산지 판정

- 제품의 제조 공정이 두 국가 이상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한 최종 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한다.

- 실질적 변형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CBP는 사안별로 부품의 원산지, 가공 공정의 정도, 설계 및 개발에 투입된 자원, 조립 후 수행된 시험의 범위와 성격, 공정을 수행한 작업자의 숙련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어느 하나의 요소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 CBP는 본 사례의 검토 과정에서 제품의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원산지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쟁점물품의 주요 구성요소 5개의 원산지를 살펴보면, 대만산 통합 카메라·LED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구성 요소 모두 중국산이다.
- 신청인이 제시한 3개의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메인 전자부품인 PCBA의 제조는 한국 또는 중국에서 수행된다. 이에 대해 CBP는 PCBA만으로 원산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5개 주요 구성 요소 모두가 전체 기기의 기능 수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특정 부품인 PCBA의 원산지만으로는 전체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또한 CBP는 기기에 탑재되는 인도산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비록 제품의 기능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나, 이는 물리적인 제조 공정이 완료된 이후 시스템에 탑재되는 요소에 불과하므로 원산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 한편, 본 사안에서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수행된 조립 공정, 즉 부품 체결, 전선 연결 및 육안 검사 등은 비교적 단순한 공정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공정만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시나리오별로 한국 또는 중국에서 수행된 조립 공정 역시 원산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 따라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물품의 자율 조리기기로서의 특성은 5개 주요 구성 요소에 의해 구현되며, 이 중 대만산 통합 카메라·LED 시스템을 제외한 4개 주요 구성 요소가 중국산이라는 점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쟁점물품의 비특혜원산지가 중국으로 판정되었다.

2) 한-미 FTA 특혜원산지 판정

- 시나리오 B 및 C에서 쟁점물품은, 비당사국인 중국에서 최종 공정을 거친 후 미국으로 직접 선적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이전 공정 단계에서 원산지 자격(한국)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3국인 중국에서 제조(역외가공)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이상, 한-미 FTA상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 한편,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제8516.60호)에 적용되는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4단위 세 번변경기준(CTH)이다. 신청인이 제시한 자재명세서에 따르면, 제8516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한국에서 최종 공정 및 제품 선적이 수행된 시나리오 A에서는 쟁점물품이 특혜 원산지 자격을 충족한다.

(5) 결론

- CBP는 쟁점물품의 5개 주요 구성요소가 모두 동등하게 중요한 요소이며, 이 중 대만산 통합 카메라·LED 시스템을 제외한 4개 요소가 모두 중국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비특혜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하였다.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국(인도), 단순 조립 공정 수행국과 PCBA 제조국(일부 시나리오에서 '한국')은 비특혜원산지로 고려되지 않았다.
- 다만, 한-미 FTA 특혜원산지 판단에 있어서는 협정 상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에 근거하여, 일부 시나리오에 한하여 특혜 원산지 자격을 인정하였다.
- 본 건은 비특혜원산지 판정과 특혜원산지 판정 결과가 서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즉, 비특혜원산지는 주요 구성요소의 원산지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중국'으로 판정되었으나, 한-미 FTA 특혜원산지는 협정상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시나리오 A에 한하여 특혜관세 자격(한국산)이 인정되었다.



(1) 품목정보

품 명	볼 밸브(Ball Valve)	
판정번호	NY N358193	
판정일자	2026-02-11	
신청국가	미국	
원산지 판정	비특혜원산지: 중국	
제품설명	대상물품: 가정용 급수관에 사용하는 볼 밸브 주재질: 스테인리스 스틸 제조 공정: 중국산 부분품을 사용하여 캄보디아에서 가공·조립 ① 기계 가공을 통해 밸브 바디와 밸브 마개 외부에 돌기 형성 ② 밸브 바디에 스템, 볼 시트 및 볼을 압입 ③ 볼 시트를 밸브 마개에 압입 ④ 밸브 마개를 나사를 이용하여 밸브 바디에 체결 ⑤ 핸들을 스템 위에 너트로 고정 ⑥ 제품 테스트, 레이저 마킹 및 포장	
부분품 정보	부분품 명칭	원산지
	밸브 바디(valve body)	중국
	스템(stem)	중국
	볼 시트(ball seat)	중국
	볼(ball)	중국
	밸브 마개(endcap)	중국
	손잡이(handle)	중국

(2) 쟁점사항

- 중국산 부분품을 사용하여 캄보디아에서 기계 가공·조립 공정을 거친 볼 밸브의 원산지 판정

(3) 분석 및 판정

1) 밸브의 원산지 판정 기준

- CBP는 밸브의 구성요소 중 핵심 부품이 밸브 바디(Valve Body)라는 점에 근거하여, 밸브의 원산지 판정

시에는 통상적으로 밸브 바디를 제조한 국가를 밸브의 원산지로 판단해 왔다.

- 또한 CBP는 이미 완성된 밸브 바디에 부품을 결합하여 최종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은, 단순한 삽입·압입 및 나사 체결 방식에 불과하여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 기계 가공 공정의 실질적 변형 여부 판단

- 본 사례에서는 중국에서 제조된 밸브 바디에 대하여, 캄보디아에서 단순히 나머지 부품을 바디에 조립하는 공정뿐만 아니라, 기계 가공을 통해 바디 표면에 돌기를 형성하는 추가 공정이 수행되었다. 즉, 이와 같이 기계 가공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를 부품 체결과 같은 단순 공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CBP는 비록 돌기를 형성하는 기계 가공이 밸브 바디에 수행되었더라도, 가공 이전의 밸브 바디가 이미 나머지 구성 부품과 결합되어 볼 밸브의 하우징으로 사용될 예정된 용도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캄보디아에서의 기계 가공 전후로 물품의 명칭, 성질 및 용도에 사실상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CBP는 해당 공정으로 인해 쟁점물품에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 이에 따라 밸브 바디의 원산지가 중국인 이상, 완성된 볼 밸브의 원산지도 중국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결론

- CBP는 밸브류의 원산지 판정 시, 제품의 핵심 부분품인 밸브 바디의 제조국을 밸브의 원산지로 우선 판단하고 있다.
- 본 사례에서 중국산 밸브 바디는 캄보디아에서 단순 조립 공정 뿐만 아니라, 표면 상에 돌기를 형성하는 추가적인 기계 가공까지 거쳐 최종 제품(볼 밸브)으로 완성되었다. 그러나 CBP는 밸브 바디가 기계 가공을 거친 이후에도 물품에 새로운 명칭, 성질 또는 용도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 결과적으로 본 건은 표면 가공 수준의 공정만으로는 밸브 바디의 원산지가 최종 완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한다는 원칙을 변경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 사례이다.

미국 CBP 사전심사 동향 분석 리포트

조현기 | 연구 2파트 | 부연구위원

E-mail: chg90@kctdi.or.kr, Tel: 02-3416-5168

공하은 | 연구 2파트 | 연구원

E-mail: ghe@kctdi.or.kr, Tel: 02-3416-5165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